



# 공공시설내 매점 · 자동판매기 등 장애인우선허가 활성화계획('03 ~ '07)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심의관 제공

## I. 추진경위

### 가. 추진배경

신체적 장애와 사회적 편견 등으로 일반사업장에 취업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자립 지원을 위하여 공공시설내 매점 자동판매기 등의 장애인 우선허가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함

### 나. 근거 규정 : 장애인복지법 제38조 및 동 법 시행령 제22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소관 시설 내에 바닥면적 15㎡ 이하의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장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기타 공공단체라 함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임
- 설치 허가권자는 매점 자동판매기의 허가를 위하여 그 설치장소, 판매할 물건의 종류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장애인에게 알리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 20세 이상으로서 세대주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가 세대주인 장애인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음
- 동 법에 의하여 허가, 위탁 또는 지정 등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접 그 사업에 종사하여야 함

## II. 현황 및 문제점

### 가. 장애인복지실태

- 우리나라 장애인구는 147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3.09%로 추정 ('00 장애인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등록장애인은 '02년말 현재 1,294천명임
- 장애인가구는 130만 가구이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108만원 정도로 도시근로자가구소득(233만원)의 46.4% 수준에 불과
  - 전체 장애인 가구의 52.2%가 월 100만원 미만의 소득임
- 장애인중 취업장애인은 전체 장애인(15세 미만 제외)의 34.2%임
  - 장애인은 신체적 장애와 일반인의 편견으로 일반사업장 취업이 어려워 취업장애인의 54.1%가 자영업에 종사

### 나. 그간 추진 경과

- 장애인복지법에 근거가 있으나, 시설관리자 등의 인식 부족 등으로 실적이 미미한 공공시설내 자동판매기 등 장애인우선허가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98.3월부터 연차적인 활성화계획 수립 및 추진
  - 공공기관 내의 자동판매기 등 장애인 허가 개소수가 '98.3월 현재 986개소(4.1%) '02.6월 현재 3,782개소(16.6%)로 확대됨

**<공공시설내 자동판매기 등 장애인 우선허가 확대 현황>**

98.3			98.12			2000.10			2001.6			'01.12			02.6		
계	매점	자판기	계	매점	자판기	계	매점	자판기	계	매점	자판기	계	매점	자판기	계	매점	자판기
986 (4.1%)	328	658	1,513 (6.3%)	431	1,082	3,070 (12.0%)	844	2,226	3,073 (11.5%)	849	2,224	3,423 (12.4%)	671	2,752	3,782 (16.6%)	767	3,015

**다. 문제점**

- 아직도 공공시설 내에 자동판매기 등 운영권을 장애인에게 허가한 실적이 전체 소관 자동판매기 등의 16.6%에 불과
  - 다수 기관에서 자체수입 확보 또는 직원, 퇴직직원을 위한 후생사업의 일환으로 운영하고 있어 장애인등 취약계층 우선 보호라는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중 관련조례가 미비한 곳이 다수
  - 2002년말 현재 13개 시도 및 (대전, 충북, 제주 제외) 72개 기초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 운영
- 허가받은 장애인과 실제운영자가 다른 경우 또는 장애인단체에서 운영하는 경우 등 부적정 운영사례가 있음
  - 2001년말에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각급기관과 장애인복지단체 등에 협조요청하였으나, 아직도 간혹 부적정 사례가 제기됨

**<장애인우선허가 자동판매기 등 운영실태>**

(조사시기:2001.4.13~10.20)

구분	총조사수	개인장애인 운영				실제 운영자가 다른 경우 <sup>2</sup>	장애인 단체 운영
		계	적정운영				
			계	직접운영	종업원고용 <sup>1</sup>		
총계	2,169	1,819	1,726	1188	538	93	350
매점·신문가판대	601	582	552	286	266	30	19
자동판매기	1,568	1,237	1,174	902	272	63	331

- 1) 종업원이 고용된 경우 종업원의 성격
  - 매점 신문가판대 : 친척, 아르바이트생, 자원봉사자 등
  - 자동판매기 : 자동판매기 밴딩회사 직원, 친척
- 2) 실제운영자가 다른 경우는 장애인이 허가받아 친척, 장애인단체, 자원봉사자 등이 운영하는 경우

### Ⅲ. 향후 추진계획

#### 가. 추진 방침

- 세부추진방법의 제시
  - 금번 활성화계획에 의거 각 공공기관에서 자동판매기 등을 장애인에게 우선 허가하기 위한 사전공고 및 신청접수와 선정, 그리고 사후관리 등의 표준화된 방법을 안내하는 세부추진방법을 제시
- 기관별 연도별 추진계획 수립
  - 모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장은 소관시설 내 매점 자동판매기의 신규설치 또는 계약 갱신 시 장애인에게 최대한 우선적으로 허가하도록 추진
  - 청사의 신축 이전 등 신규 매점 자동판매기의 설치 수요가 많은 기관을 해당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우선 사업 대상기관으로 지정하여 중점 관리하며, 이미 운영자가 비장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등에 연차적인 계획에 의거 장애인으로 운영자 전환
    - '03~'07년까지 추진할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동 계획서(별지 1호서식)를 '03. 6.18(수)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관별 연도별 종합추진계획을 수립
- 추진상황 관리
  - 모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는 '04년부터 '08년까지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말 현재 장애인 우선허가 실적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
  - 보건복지부 장관은 각 기관별 연간 추진 실적을 종합 관리
  - 매년 기관별 시도별 장애인 우선허가 실적을 공표
- 관련조례 정비
  -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시설내 자동판매기 등 우선허가를 확대하기 위하여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의 관련조례 정비

#### 나. 세부 추진 방법

- 우선허가 대상 공공시설
  - 국가기관 및 소속기관의 청사와 동 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와 동 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등 공공기관의 청사와 동 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 우선허가 대상 매점·자동판매기의 범위
  - 우선허가대상 공공시설내에 설치하는 커피·음료수 등을 판매하기 위한 자동판매기
  - 우선허가대상 공공시설내에 설치하는 식료품·사무용품·신문·복권 등의 판매를 위한 15제곱미터이하의 매점 등

○ 사전공고

-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장은 소관시설 안에 매점 또는 자동판매기를 신규설치 또는 계약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설치장소 · 허가조건 · 운영권자 선발기준 및 선발일시 등을 지방자치단체회보 · 반상회보 등에 사전공고

○ 신청

- 매점 또는 자동판매기의 설치계약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
- 매점 또는 자동판매기의 설치 또는 운영계약 신청서(시설의 장이 정한 소정양식)
- 장애인등록증과 주민등록등본 등 시설의 장이 정한 증빙서류
- 장애인 직접운영 등을 위한 각서 정구(별지 제2호 서식)

○ 1인 1개소 허가

- 매점 등 설치개소수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장애인 1인에 대하여 매점 · 자판기 등 1개소의 운영권만을 허용하되, 수익성 등을 고려하여 2개소 이상을 함께 허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장애인 직접운영

- 매점 또는 자동판매기의 운영권을 허가 받은 장애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접 그 사업에 종사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전매하거나 양도하면 안되도록 조건을 제시함. (각서 정구)
- 정신지체장애인 등 장애인이 직접 관리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시설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그 보호자 등에게 허용
- 공공시설내 자동판매기 등 장애인우선허가제도는 장애인의 생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므로 장애인복지 단체 등에 수익사업으로 허용 불가

○ 운영권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다수인 경우 다음 기준에 의한 우선순위에 의거 운영권자 선발

1. 생활보호대상자인 장애인
2. 저소득 장애인
3. 부양가족이 많은 장애인
4. 중증 장애인
5. 관련시설로부터 거주지가 가장 가까운 장애인

○ 시장 · 군수 · 구청장에 우선 허가 대상 장애인 선발 의뢰

- 소관시설 안의 자동판매기 등을 장애인에게 우선 허가 하고자 하는 기관은 관할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장애인의 선발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위의 세부 추진방법에 의거 적합한 장애인을 선발하여 해당 기관에 통보

[별지 제1호 서식]

매점 · 자동판매기 장애인 우선허가 실적 및 계획

구분	매점			자동 판매기	비고	
	복합매점	신문·복권 판매대	기타			
장애인 우선 허가 현황	합계	2003. 3월말 현재 장애인 우선허가 개소수(A)				
		전체 개소수(B)				
		장애인 우선 허가 비율(A/B)				
	시설별 장애인 우선 허가 개소수	청사				
		지하철역				
		교통시설 (지하철역 제외)				
		공원				
		관람집회시설				
		체육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전시시설				
기타						
장애인 우선허가 확대 계획	합계					
	2003					
	2004					
	2005					
	2006					

③ 장애인 우선 허가 비율

- 소관 시설 안의 바닥면적합계가 15 제곱미터 이하인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중 장애인에게 우선허가한 비율

④ 시설별 장애인 우선허가 개소수

- 2007년말까지 장애인에게 우선 허가한 바닥면적 합계가 15제곱미터 이하인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개소수 중 아래 기준에 의한 대상시설별 분류

- 청사: 국가 · 지방자치단체 · 공공 기관의 업무수행을 위한 청사 (건축법상 근린공공시설이 나 업무시설에 해당하는 것)
- 관람집회시설, 체육시설: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체육관
- 교육연구시설: 각급학교, 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 도서관
- 전시시설: 전시장, 동 · 식물관
- 방송통신시설: 방송국, 전신전화국
- 기타: 위에서 분류되지 않은 공공 시설

① 2003. 3월말 현재 장애인 우선허가 개소수

- 2003. 3월말 현재 소관시설내의 바닥면적합계가 15제곱미터 이하인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중 장애인에게 우선 허가한 개소수 합계

② 전체 개소수

- 현재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할 계획이 있는 바닥면적 합계가 15제곱미터 이하인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개소수 합계

⑤ 연도별 우선허가 확대계획

- 2003~2007년간 장애인에게 추가로 우선 허가를 확대할 바닥면적 합계가 15제곱미터 이하인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개소수

※매점 자동판매 장애인 우선허가실적이 낮은 기관은 그 사유를 별지서식에 작성 요망